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4. 29.(금) 09:0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3차,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제2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23-09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그린카, 롯데렌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로오투오,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톱툼코리아, 한국마사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3월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 결과는 한국마사회 등 6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그리고 오원과 유비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70점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법인별 세부 심사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신청한 8개 법인 중에 2개 법인은 부적격이고 나머지 6개 법인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과 요즘 이야기하는 IoT(Internet of Things)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IoT가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의 하나가 위치정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대부분 다 IoT...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 비콘을 이용해서 매장 콘텐츠 정보,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새 이야기하는 사물 IoT 중에서 사물인터넷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논의가 되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인더스트리로 보고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하면 더 진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방통위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GPS 단말기다, 비콘이다 하는 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 서비스 육성 등이 다 방통위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개 사업자 허가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업 허가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위치정보사업이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난번에 보고드린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정보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하위 법령도 같이 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거나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위치정보에 관해서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다 보니까 위치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도 개인뿐만 아니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대한 위치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물건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물건만의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가 파악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선 개념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정보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한 위치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금 현상을 보면 현행 위치정보법은 지금 현상과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한 산업 활성화 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면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허가조건과 관련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허가받은 6개 법인의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등에 관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가 향후 3년간 매 반기별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가>, <나>, <다>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에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이것을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에서 이것이 확인이 다 가능합니까? 특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이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히 다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첫해에는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소요 설비나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의 사업들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적과 그 다음 기간 동안의 투자계획을 점검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라는 것은 수집된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권리가 다 보호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목록들을 다시 좀 더 꼼꼼하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체적으로는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이행실적,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이행실적, 다시 말하면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매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인데,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행실적 점검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해 보는 것을 구비하도록 하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심사 결과를 보니까 심사항목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배점이 어떻게 되지요? 3개가 동일하지는 않겠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붙임 2> 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이 30점, 위치정보 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이 30점,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은 40점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로서는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할 것인가가 역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오원, 주식회사 유비의 자산규모와 매출규모가 제일 작은 회사 같은데 대체로 대기업들은 통과하고 중소기업들은 통과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합격한 기업 중에 오원이나 유비만한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대체로 다 대기업 계열사인 것 같습니다. 톱툰코리아가 그렇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톱툰코리아는 규모가 작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작은 회사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1억원 정도입니다.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로케이션 베이스드 인더스트리(Location Based Industry)는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셰어링(Car sharing), 이런 것 말고도 위치정보 산업이 많은데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보호조치의 적정성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에도 있지만 정보보호를 제대로 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 안건은 지난 4월 11일 위원회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4쪽이 되겠습니다. 제19차 위원회 보고 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통신방법 등에 근거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자게시물과 관련해서는 사자(死者)의 유족도 사자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자기게시물 판단방법에 있어서 게시물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간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접근배제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면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요청인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기게시

물 입증의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접근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접수해 주시면 5월 중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된 안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별도로 수렴하셨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였고 최종 안에 대해서도….

○ 최성준 위원장

-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자게시물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게시물 관리권을 어떤 사람에게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 지정받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접근배제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이 유족에게도 사자(死者)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이 스스로 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혹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개인이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자기게시물 관리권을 위임해 놓은 지정인의 의견과 유족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지정인 또는 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는 것이 좋겠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정인이 있으면 지정인에게 맡겨지는 것이고 당사자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지정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에게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런데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 쪽에서 이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족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중재법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사업자 면책 부분도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완이 됐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심정적으로 자기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도 점점 빈약해지고 또 검색 항목도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삭제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인력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확인이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본인임을 확인 못 하겠다', 추가 소명을 계속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본인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잘 원만하게 하면 몰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사업자의 심리상 쉽게 '아직도 나는 확인을 못 하겠다. 당신이 본인인지 모르겠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남발될 우려를 대비해야 할 텐데 그런 일이 많으리라고 보십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현실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쟁 발생의 소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름이나 주소, 또는 경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인이 서류 등을 통해서 입증하면 사업자들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 큰 틀에서 본다면 가이드라인의 도입 취지가 이용자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사업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자세가 안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규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나 준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이럴 경우에는 거부하면 안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반드시 삭제 요청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항이 사업자 면책조항은 단순하게 표기할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예상해서 항목을 늘리더라도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든가, 이런 본인확인 절차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의지는 이미 확인하였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행을 잘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임시조치에서도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KISO나 또는 인터넷기업 협회 등과 협의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걱정이 자칫 사업자 면책조항을 사업자들이 많이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취지가 훼손되고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접근배제 거부와 관련하여 자기게시물 입증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가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 또는 항목을 들어서 상세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나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입증 충분 여부에 관해서는 KISO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시행되어서 다양한 사례들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봐서, 게시판 관리자나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너무 의도적으로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쌓인 사례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나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이 상태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2단계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보면 과거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강화 이것이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면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보 강자들보다는 정보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러한 제도 수립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자 설명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설명회 개최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취지로 보면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생기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 접수된 이후에 보도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먼저 홍보하고, 또 사업자들도 시행 준비가 약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사업자들 스스로 지금 현재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들 스스로도 안내 창구를 만든다든가, 담당 부서 또는 직원들을 지정해서 사업자들 스스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도를 만들고 운영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단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리는 계획에 그치지 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하든지 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웹툰을 작성해서 관심을 갖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홍보수단을 만들어서 기왕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자신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써 올린 글에 대해서 삭제하고 싶다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초기 단계의 접근배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한 번 살펴보고 그다음 단계로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의 삭제요청권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이 많이 있는가를 잘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요일 날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약간의 과장 또는 극단적인 케이스에 관한 설명일지 모르지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결혼이나 취업을 할 때 이러한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80만원을 주면 한 개인의 인터넷상에서의 또는 모바일상에서의 정보를 하루 만에 정확하게 수집해서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취직이나 결혼 전에 당사자가 소위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르는 데에 부탁을 할 때는 기본이 200만원이고, 그 작업을 하는 데에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올린 글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접근배제권이 잘

활용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잇힐 권리의 개념, 범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법령이나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잇힐 권리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안건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현실적·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이런 이슈를 우리 방통위가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연구도 같이 하고 또 의견수렴도 이번처럼 이렇게 듀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친 사례가 있을까, 다른 경우는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외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차선 중에서는 최선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방통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주요 정책사례 중 자신 있게 국내외에 알리고 피드백도 받는 사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 국민들과 사업자들 간에 혼선이 있거나 이해가 덜 되어 있으면서 분쟁, 의문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포털사업자에게 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방통위의 누군가에게 물으면 이 가이드라인 내용 설명도 잘해 주고, 또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계속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서 그것을 클리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문의처, 이것이 아니고 이용자정책국의 어느 컨택포인트(Contact point)를 하나 딱 정해 놓고 이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서로 오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쪽으로 문의하라, 이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아주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가 아니고 안착 내지는 정착, 이것이 우리의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통위가 하는 업무라는 것이 워낙 시장 섹터(Sector) 자체가 빨리 변하고 있어서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막상 시행을 하면 또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연후에 이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매일매일 보완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야 시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0만원, 200만원 이런 돈이 거래되고 만약에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세탁소가 성행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가받지 않은 영업활동이지요? 불법이지요? 어떻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불법이 아닙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도 저희 쪽에 디지털 장의사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이 허용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어떤 근거로 허용이 되지요? 얼핏 생각하기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시장, 통신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듭니다. 돈을 받아서 어떤 대가를 받는 행위,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의 의도대로 왜곡되게 삭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감독과는 별개로 어쨌든 영업활동 자체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이 위임한 범위에서 찾아내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본인이 시간도 없고 또 공을 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전문가가 대신 대행해 준다는 개념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불법이 아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불법이 아닌 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 측면이 있고, 또 민간 자격에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만약에 불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직업이든지 자격증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장의사나 인터넷 세탁소의 허가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최윤정 과장님, 우리한테 등록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범상 인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법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려면 영업규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명칭이 뭐가 됐든 이런 형태의 영업을 방통위가 아니더라도 정부 어느 부처에서든, 어느 법에 의해서든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부터 클리어 해 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윤정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민간 자격에 관해서 자격기본법이라고 있고 거기에서 금지사항으로 열거해 놓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관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잇힐 권리, 또는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관부처를 방통위로 하도록 협의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디지털 세탁소에 대해서 민간자격을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세탁사 자격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직능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직능원에 위탁해서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런 자격을 준다는 것을 그쪽에서 검토해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자격제도 이야기와 사업 내지는 영업에 대한 제도 이야기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명칭이 뭐가 됐든 그러한 비즈니스가 자유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영업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격 가지고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이 뭐가 됐든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하면 해 보고, 이것이 과연 민간자격제도 운영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최소한의 진입에 대한 규제, 영업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

다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없다고 영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자격이 있으면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또 김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게시글을 찾아주는 업을 하는 것과 또 게시글을 삭제해 주는 업을 하는 것이 원래는 본인이 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시간이나 또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어서 현재로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이 규모가 커졌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눈여겨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유럽에서는 소위 잊힐 권리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일반정보보호규정)을 쭉 몇 년 동안 논의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잊힐 권리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의회가 합의한 안에는 '잊힐 권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삭제권'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상반기에 의회를 통과하면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유럽의 동향도 앞으로 계속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해외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협조를 구했고, 그다음에 또 해당 국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도 저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것은 맞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이드라인 운영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또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더 보충할 부분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즉각 대응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 관련 문구를 조금 수정할까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데 '또는'이 그런 의미를...

○ 최성준 위원장

- '또는'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지정인과 유족 간의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침이 최윤정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정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정인이 있더라도 유족들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더 나을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자구가 디테일로 가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안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자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지정인이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유족이 '아니다. 이것은 이 글을 그대로 놓아두고 싶다'라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사자께서 생전에 그러한 일종의 유언으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지정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정인이 우선한다면 여기에 뭔가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만 사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지를 두자는 것

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약간 협의의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속 제도처럼 수십 년 내지는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 제도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처음 해 보는데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위임한 지정인과 유족이 어떤 관계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하게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클리어하긴 한데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자(死者)가 생전에 지정인에게 위임할 경우에 어디까지 위임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전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그것을 지우라고 명시해서 내용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사자(死者)가 생전에 남긴 글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자(死者)가 지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 지정인이 자기 판단으로 이것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우려고 했을 때, 또 한편으로 의견이 다른 유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유족의 현재 활동과도 연관이 있거나 유족의 후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의견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냐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협의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死者)가 그 판단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유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유족들의 명예도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을 이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붙임> 9페이지에 보면 접근배정요청인 지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대상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인의 접근배제요청 제한 범위,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자(死者)의 의사가 유족의 의사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자(死者)가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의뢰해 놓고 사망했다면 그것이 더 존중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렇게 보시면 어떨습니까? 위임한 지정인이나, 지정인이 없는 경우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원래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해 놓고 유족과 지정인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족 입장에서 봤을 때 생존에는 몰랐지만 유족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리고 생존에 지정인을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유족이 지정인에게 요청한다든지 그런 여지를 둔다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자구대로 한다면...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 이기주 상임위원

- 협의 이런 이야기는 안 쓰는데 '지정인이나 지정인이 없는 경우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사자(死者)가 접근배제 권한을 위임한 지정인과 유족이 이견을 보일 경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 다툼에 맡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용자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자(死者), 예를 들면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녀들도 일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에 관한 재산, 내가 써 올린 글에 대한 삭제권은 이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지정인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호소해서 거기에서 다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근거 있는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판단해서 유족의 의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근거가 없다, 약하다면 사자(死者)가 지정한 지정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손대지 말고 '기타 게시물' 여기까지 본문으로 놔두고 괄호 열고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유족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면 일단 지정인의 의사가 더 우선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괄호 열고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사에 의하기로 한다', 이 정도로 문구를 하나 더 추가해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지금 수정한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 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어제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를 위한 지원' 안건을 야권 추천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추천이사 5인이 표결을 통해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송교류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안건은 내용의 부실함은 물론 안건의 논의 시기, 절차, 그리고 추진방식 등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번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방문진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에 그 업무를 보면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그리고 기타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익사업 또한 방송 유관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 처리 이전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북한에 나무심기나 해충 방제 등 대북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경우는 MBC의 남북방송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의 내용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상적인 남북방송 교류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관련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는 대북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닌 법정기구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단체의 자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방송 유관기관의 남북방송교류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와 같은 법과 공식적 논의구조의 틀 내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규정된 대북협력사업의 승인기준을 보면 이번 안건과 같은 남북교류사업의 추진기준으로 준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을 보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1호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2호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제3호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제4호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 기술, 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이러한 협력사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안건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느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문진 다수 이사들이 올린 결의안을 보면 KBS의 한민족방송을 지원한다거나 탈북자들의 대북방송 지원, 그리고 라디오 수신기 보급, USB에 한국콘텐츠를 담아서 보급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전혀 협력사업의 취지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대북방송이나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문진 이사진 내부 공감대 형성도 없이, 그리고 방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상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방문진을 운영하고 설사 남북방송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의 취지나 정부 내 논의구조를 존중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다, 특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문진이 전혀 방통위나 정부 관련 기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석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님들 간 티타임이 아니면 다른 비공식적인 자리이든, 논의의 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를 지명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제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발언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제가 침묵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방문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검토해 보자, 그래서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놓고 앞으로 이 사업을 채택할 것인지를 그때 의결에 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단계상 일단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줄기에서 본다면 그동안 MBC가 대북사업을 지원해 온 선례가 있었습시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심기 등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이것은 방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없습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나 통일 분위기 조성, 통일의지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시다. 이런 사업이 또 대북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여러 분야, 민간 분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시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현행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사업의 기조와 벗어나거나 거기에 침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의 대북정책 사업이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너도나도 다 이렇게 나선다면 특히나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시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시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협의를 요청할 것입시다. 그래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시다.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아직 그렇게 걱정이나 우려를 하실 단계는 아니다,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큰 틀에서 방문진 전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시다. 그래서 그렇게 줄속으로 추진되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은 저도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감독권을 행사한다, 만다,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걱정은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선 방문진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이라면 방통위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이런 사업은 하세요', '이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서 방문진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 위원님이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논의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안전으로 제시해서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제가 듣기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고 위원님과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팩트에 대해서 저는 두 분만큼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도록 해 주시라고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말씀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가지고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의에는 참여 안 했으면 합니다.

(이기주 상임위원 퇴장)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따로 나중에...,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니 저러니 논의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안전으로 올려서 논의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 최성준 위원장의장

- 의사진행 발언은 허용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문제를 우리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한 분만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은 그렇게 하고 일종의 퇴장이신지 먼저 나가셨는데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자체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문제없는데 우리가 임명권을 행사한 이사들이 거기에서 정파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쪽이 나뉘어서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그러면 방문진 이사회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통과된 것이 없다고 하시고 고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서는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어제 이사회는 파행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찬반 간 토론이나 더군다나 어떤 컨센서스 하나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엄연히 방통위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방문진을 얼마나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 방문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지만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부처 간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창구 일원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기본원칙입니다. 대북정책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방송교류에 관한 것을 결정하면서 방통위 산하의 법정기구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의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임명권을 받는 방송 경영기구가 한다는 것은 남북정책에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언할 수 있어

야 하고 우리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보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거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회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실관계를 모르면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지….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파악해서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업무파악을 빨리 하고 늦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위원 한 분이 업무 파악을 안 했다고 '나는 그것을 몰라. 아직 파악도 못 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논의하려면 당연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논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파악 안 한 위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타 안건 사항은 그렇게 논의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기타 안건 사항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우려사항을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파악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악한 내용에 대해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자만 아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김석진 위원님 알고 계시고, 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주민 한국방송 시청을 위한 지원' 그 내용이 됩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아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결의문 다 읽어드릴까요?

○ 최성준 위원장

- 결의문이 아니고 거기에서 통과됐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결의안과 사업계획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남북방송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추진하는 방식이나 주체들도 정확히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문진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안전으로 채택하지 말고 사전논의를 더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수 측 이사들이 강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를 구성했는데 그것은 추진을 전제로 소위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팩트만 이야기해야 하고, 결의문이 채택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도 아직 문건을 못 봤는데 소위를 일단 구성해서 검토해 보자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저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

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감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제기 하셨으니까, 또 제가 지명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제가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 업무를 감독해서 '나와 협의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안 돼'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진행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면 방통위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다 같이 배포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다 알고 논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일부 사람은 알고 일부 사람은 모른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제안했으니까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면 마치 그것이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비대칭도 말씀하셨는데 논의를 정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다섯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긴급안건이면 '긴급안건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든지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런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어제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한 것은 최소한 같이 안 상태여야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건으로 올려서 공식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행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식으로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의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은 없다고 보시지만 부위원장님과 저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 견해 차이는 인정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기주 위원님은 왜 퇴장하십니까? 논의를 해야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행처리라고 표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의결을 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의결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무슨 의결을 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한 것 아닙니까? 결의안을 채택하고….

○ 최성준 위원장

-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안전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전을 소위에서 일단 논의해 보기로 했다', 그런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결의안을 안전으로 상정했었고, 이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 측 이사들께서는 이 안전 자체를 논의하지 말고, 사전에 사전협의를 더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 측 이사들은 안전으로 채택되어서 보고가 되고, 소위가 구성된 것을 단계 단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소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저는 모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보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님들은 관심이 높지만 어떤 위원님들은 관심이 적을 수 있고, 또 바깥 사정에 대해 정보 취재도 어떤 위원은 빠르고 어떤 위원님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언하고 안전으로 또는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의에서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공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는 듣고, '그럼 우리 좀 더 알아보고 상황을 공유한 뒤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논의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서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굳이 기타 논의사항을 이야기할 때, 논의를 못할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논의를 못할….

○ **최성준 위원장**

- 논의를 못 하지요. 지금 정보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논의를 못 하지만 더 알아보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안전으로 올려서 다음에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안전으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단 여기에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고….

○ 최성준 위원장

- 문제제기라는 것은 논의의 전제이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물론이지요. 여기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알아보고, 정보 상황을 공유한 뒤에 논의하기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처를 통하지 않고서도 의안을 제의할 수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고 상임위원들끼리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안을 미리 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기타 안건을 통해서 의안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옳지 않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업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우리 기구로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정책의 기본원칙은 창구 일원화이고 부처 간 사전 협의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의 감독기구인, 우리가 임명권을 행사해서 보낸 이사회가 그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일방적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데 남북교추위가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남북방송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물론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재야 팟캐스트(Podcast)의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우리가 감독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법제 안에 있는 한국의 방송통신 서클(Circle), 더군다나 우리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영방송의 기구, 임명권을 행사하는 기구, 그 기구의 남북방송통신교류에 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말

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다음부터는 미리 정보를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제가 되었을 때 논의사항이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0분 폐회 】